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6674 손해배상

원 고 1. 원고1(1998년생)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 고 1. 서울특별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소송대리인 김광자, 김양이

2. 피고2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446-11 (망우동)

변 론 종 결 2013. 2. 1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피고2는 임○○, 한○○, 김○○, 이○○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2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1에게 40,000,000원, 원고2에게 10,000,000원, 원고3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소외인2가 원고1에게 가한 별지 가해행위 일람표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1과 그 부모들인 원고2, 원고3이 소외인2의 부친으로서 그의 감독의무자인 피고2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가해행위의 발생

(가) 원고1은 2011. 3. 서울 중랑구 소재 甲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학교 동급생 들인 소외인1, 소외인2, 소외인3, 소외인4, 소외인5 등(이하 '가해 학생들'이라고 한다) 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방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소외인1이 원고1에게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점차 권력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갔고, 가해 학생들은 원고1을 소외시키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가해 학생들은 2011. 11. 말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원고1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가해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다(이하 가해 학생들이 원고1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1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불안감이나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2012. 2. 15.경 타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하게 되었다.

(2) 가해행위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관련된 사항

(가) 원고1과 관련된 사항

원고1은 2011년에 가해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교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훈계를 듣고 상담을 받는 등 특별한 주의를 끌고 오고 있었으며, 부모인 원고2, 원고3 역시 수차례 면담을 받았는데, 담임교사가 메모하여 둔 상담 내역은 별지 상담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가해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

가해 학생들 중 소외인1, 소외인2, 소외인5는 2011. 6.경 甲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급우를 폭행하여 7일간 특별교육을 받았다. 한편, 소외인5는 교내흡연, 교내폭력 등으로 2회의 징계를 받았다.

(3) 학교 측의 조치

(가) 사전적 예방 조치

甲중학교에서는 2011년에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예방조

치 일람표 기재와 같이 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연수, ③ 학교 폭력 피해 설문조사, ④ 순찰 및 감시 활동, ⑤ 캠페인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인지

甲중학교의 체육 교사는 2011. 12. 23. 원고1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는데, 원고1은 화장실에서 혼자서 넘어져 다쳤다고 대답하였다. 원고1의 상처가 학교 폭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 체육 교사와 담임 교사는 CCTV를 통하여 원고1이 해당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1에게 다시 한 번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으나, 원고1은 여전히 혼자서 넘어졌다고 대답하였다. 위 사건이 2011. 12. 16.경 원고1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던 일(원고1은 그 이유를 묻는 담임 교사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경사진 곳에서 심하게 넘어졌다고 대답했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담임 교사는 甲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1의 누나와 원고1의 부모에게 원고1이 입은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것 같으면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원고1은 귀가 후 비로소 누나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나) 사후적 조치

원고1의 담임 교사는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후, 원고1 및 그의 부모들인 원고2, 원고3과 상담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상담하여 다른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甲중학교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권고전학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소외인1, 소외인2, 소외인3에 대하여 권고전학 및 접근금지 ;

소외인4에 대하여 등교정지 5일·특별교육 5일·공개사과 및 서면사과·접근금지 ; 소외인5, 소외인6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공개사과 및 서면사과·접근금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 내지 20, 을가 1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甲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1은 甲중학교의 동급생들인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원고1의 부모인 원고2, 원고3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2) 원고들의 피해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학교 폭력과 관련한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 판단 기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내지 예견의무를 전제로 한 결과회피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의 회피의무의 위반과 그 전제로서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행위가 집단 따돌림, 즉 학교 폭력의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돌발적인 학생 간의 싸움이나 폭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사전적으로는,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하고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영향력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존중과 배려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구조를 형성하며,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교육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자료 수집, 가해 학생에 대한 계도 및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의 격리 등 보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및 교우관계의 복구 등 여러 방법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모두 취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발생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치들을 모두 취하지 않으면 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학교 폭력은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교 환경적 요인의 제거만으로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점, 사전적 예방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높게 요구할 경우 주의의 정도가 강화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후적 대처와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조장하여 오히려 피해 학생의 보호에 미흡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의무교육의 경우 피교육자의 선택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점, 무엇보다 교사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할 경우 학교 교육에 있어 교사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데, 이는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확보라는 핵심적 교육 이념에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회피의무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폭력의 일반적 예방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용되거나 알려져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함이 명백한 조치만을 취한 경우(추상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장이나 교사로서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책임 여부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당 부분은 甲중학교 교내에서 점심시간 등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1이 재학 중이던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추상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甲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연수, 학교 폭력 피해 설문조사, 순찰 및 감시 활동, 캠페인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점에 비추어보면, 강제2, 5,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강제3, 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용되거나 알려져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함이 명백한 조치만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1의 담임 교사가 원고1과 가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록 학교 폭력이나 비행에 연루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1이 가해 학생들과의 친분을 표시해 오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숨기려 들었던 점,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원고1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수 차례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원고1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훈육에 힘을 쏟았을 원고1의 부모들인 원고2와 원고3조차 이 사건 가해행위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인지된 것 역시 甲중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탐

지 활동에 크게 힘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1과 가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1의 담임 교사 등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甲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용

〈가해행위 일람표〉

일시	내역
2011. 11. 말경	가해 학생들은 甲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원고1에게 5,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1. 12. 초순경 원고1로부터 5,000원을 받아 갈취함.
2011. 12. 15.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점심 시간에 甲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1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힘.
2011. 12. 16.	소외인2가 원고1의 걸옷을 빼앗아가면서 2학년 선배 소외인6에게서 담배를 받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원고1이 소외인6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난 소외인6이 원고1과 소외인1, 소외인2, 소외인3을 폭행함. 이에 가해 학생들은 선배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화풀이하기 위해, 방과 후 서울 중랑구 소재 ○○공원으로 원고1을 데려가서 소외인1, 소외인2, 소외인5 등이 집단 폭행하였고, 소외인1의 핸드폰으로 맞은 왼쪽 귀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원고1을 소외인1의 집으로 데려가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여준 후 소외인1, 소외인3, 소외인2 등이 집단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소외인1의 집 부근 골목에서 소외인1, 소외인3, 소외인2 등이 원고1을 다시 집단 폭행하였음. 그 후 가해자들은 위 폭행 과정에서 소외인1의 핸드폰 액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1에게 100,000원을 가져오라고 강요함.
2011. 12. 23.	원고1이 자신의 걸옷을 소외인2가 가져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자, 가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1이 체육수업을 받던 중 잠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고1을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집단 폭행함.

〈상담내역표〉

일시	내역
2011. 3. 7.	원고1이 청소를 하지 않고 귀가하여 훈계를 하고 별 청소를 지시하는 한편 모친인 원고3과 전화 상담을 함.
2011. 3. 22.	원고1, 소외인1 외 1명이 이 교복을 심하게 줄여 입어 훈계를 함.
2011. 4. 11.	상동
2011. 4. 15.	원고1, 소외인7 외 1명이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1 및 부친 원고2와 상담을 하고, 1주일 흡연측정 조치를 함.
2011. 4. 20.	원고1이 여학생의 가방에 침을 뱉었다는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함.
2011. 5. 2.	학급 내 교복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1 및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3일간 교내봉사 선도처분을 함.
2011. 7. 11.	소외인1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1의 피해를 물어보았으나 친하기 때문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음.
2011. 8. 30.	수련회 방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인1이 원고1 없이는 왕따라고 하면서 함께 방을 쓰기를 위하여 회장과 원고1, 소외인1을 한 방에 배정함.
2011. 9. 29.	원고1이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의 얼굴을 때려 명들게 하여 사과하도록 함.
2011. 12. 1.	원고1의 흡연 문제에 관하여 면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음(교사 수첩에는 '원고1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기재가 있음)
2011. 12. 12.	원고1이 2학년 반 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설명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같은 방에 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교사 수첩에는 '원고1이 소외인7과 같은 반이 되고 싶은가? 친하긴 하지만 둘은 수업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가 있음).
2011. 12. 17.	원고1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자전거 타다가 경사진 곳에서 심하게 넘어졌다고 함.
2011. 12. 21.	원고1이 수업 시간에 누워 있고, 입술이 마른 것 같아 물어보니 입술이 튼 것이라고 대답함.

〈예방조치 일람표〉

분류	일시	내역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2011. 3. 19.	전교생을 상대로 '학교 폭력은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제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법적 처벌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강연을 함.
	2011. 3. 21. ~ 2011. 3. 30.	전문 상담교사에 의하여 각 반별로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1학년 신입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적응교육' 실시
	2011. 8. 20.	학교 담당 경찰관을 초청하여 전교생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연수	2011. 11. 3. 2011. 11. 21. 2011. 12. 19.	학교 폭력의 법적인 책임과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지도 관련 교장 또는 교감 연수
학교폭력 피해 설문 조사	2011. 3. 30. 2011. 10. 13.	상반기 및 하반기에 2차례 실시
순찰 및 감시활동	연중	매일 점심시간에 학부모 순회 지도단(교사 1명, 학부모 2명, 배움터지킴이 1명, 선도부 4명으로 구성된 2개 조)에 의한 교내 취약 지역(복도, 화장실, 교사 뒤편, 매점 주변)의 순회 및 폭력 예방 안전 지도.
	연중	매일 점심시간에 학교장이 교내 순시
	연중	실내 및 실외에 40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캠페인 실시	2011. 3. 14. ~ 2011. 3. 19.	2011학년도 친구 사랑 주간.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한 자료를 교실에 게시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지정하여 현수막으로 안내함.
	2011. 3. 17.	학교 폭력 예방 관련 인터넷 사이트(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왕따닷컴 등)와 상담 및 신고처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2011. 9. 15.	전화 및 방문 상담과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폭력 SOS 지원단'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